〈논 문〉

法, 規範 및 無規範에 대한 社會學的 考察

——槪念的 圖式을 中心으로——

韓 完 相*

《차 례》

一. 問題 提起
二. 規範의 性格과 類型
三. 役割의 性格과 類型
四. 法의 性格과 類型
五. 無規範

一. 問題 提起

社會規範은 社會學에서 가장 重要視하는 問題이다. Comte 以後 社會學을 社會統合, 社會秩序와 社會變化를 硏究하는 學問이라고 볼 때 規範에 대한 社會學者들의 關心은 면면히 흘러 내려왔다. 社會規範의 性格, 機能 및 類型에 대한 정확한 把握 없이 社會統合과 秩序, 심지어 社會變化에 대한 分析과 理解가 거의 不可能하다.

이렇게 規範에 대한 硏究가 社會學에서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 把握은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다. 規範의 性格과 類型에 대한 硏究는 대단히 저조하고 조잡하다. 그런만큼 法社會學도 크게 進展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微視的인 硏究는 法社會學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規範現象에 대한 基本的이면서도 綜合的인 깊은 考究는 흔하지 않았다.

筆者는 적어도 세가지 目的을 가지고 本小論을 펴나가기로 했다. 첫째, 社會規範과 法과의 관계를 먼저 槪念的으로 把握해 보려고 하였다. 둘째, 社會役割과 法과의 關係가 槪念圖式上 어떠한지를 알아 보려 하였다. 세째, 無規範(아노미)의 槪念을 뚜렷하게 함으로써 社會規範現象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같은 세가지 問題意識이 비록 만족스럽게 글로써 살아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法學과 社會學間의 相互關聯性과 그 重要性을 부각시키는 데는 多少의 도움이 되리라고 筆者는 믿는다. 이같은 作業에는 筆者의 獨自的 理論이 있을 수 없고 단지 다른 社會學者들의 귀중한 업적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副敎授, 社會學.

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韓國에는 法學界에 法社會學의 理論的 또는 槪念的 硏究가 활발치 못한 것 같고, 社會學界에서도 規範에 대한 綜合的 分析과 理解가 不足하다는 點을 감안할 때 이같은 拙稿가 조그만한 學問的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二. 規範의 性格과 類型

規範 또는 社會規範은 社會現象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현상이다. 社會學에서 가장 重視되는 基本槪念 가운데 規範과 役割을 빠뜨릴 수 없다. 役割을 社會學의 基本 分析單位로 본다고 할 때, 이것을 構造的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個人行爲의 屬性으로 보느냐에 따라 社會學의 獨自的 對象 내지 獨立學問으로서의 性格이 다르게 밝혀질 수 있다. 가령 役割을 行爲의 次元에서 理解한다면 社會學이 心理學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心理學的 還元論(psychological reductionism)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社會規範이 社會學의 基本 分析單位가 된다고 할 때, 心理的 還元論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社會의 規範的 現象을 넓게 보아 無規範的인 現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規範에 관한 硏究가 社會學의 核心的인 것임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社會統制와 逸脫行動을 위시해서 社會化의 問題 및 社會體制 및 制度의 問題가 모두 이러한 規範的 現象에 內包되는 것이다.

社會規範과 法과의 關係를 槪念的으로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社會規範에 대한 개념적 分析과 理解가 要請된다. 社會學에서 使用되는 規範의 槪念은 결코 명료하지 않다.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Jack P. Gibbs는 세가지 理由를 들어 이같은 不明瞭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규범에 대한 총괄적인 定義가 不足하고, 둘째, 規範의 여러가지 類型을 區分하는 적절한 圖式이 없고, 세째로, 어떠한 狀況에서도 진실한(true) 本質的인 규범과 狀況에 따라 그 眞實性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一般的 定義에 맞지 않는 규범간의 一貫性 있는 差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規範에 관한 社會學的 處理가 애매하였다고 한다.(1)

Gibbs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社會學에서는 規範의 槪念에 대해 多樣한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統計的 意味에서 "規範"이 될만한 規範에 대한 定義를 찾아 보기 어렵다. 一般的으로 規範이라고 하면 社會學에서는 價値와 연관시키든지 아니면 役割과 연관시켜 생각한다. 특히 規範이라고 하면 文化規範을 聯想하여 이것을 명료하게 定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일하게 Sumner의 folkways와 mores로 同一視하게 된다.(2) 이러한 安逸한 槪念的 理解를 차치하고서라도 規範에 대한 定義가 社會學者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하는 事實에 注目할

(1) Jack P. Gibbs, "Norms: The Problem of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March, 1965), p. 586.

(2) William Graham Sumner, *Folkways* (New York : [Mentor] New American Library, 1960). mores는 보다 가혹한 制裁를 가하는 規範으로서 그렇지 않는 folkways와 區別된다. 특히 mores의 遵守와 同調는 社會 全般의 福祉와 秩序에 긴밀히 연관된다고 한다.

必要가 있다. 몇가지 例를 들어보자.[3]

Bierstedt는 다음과 같이 規範을 規定한다. "規範이란 우리가 參與하는 社會狀況에서 우리의 行爲를 支配하는 規則 또는 標準이다. 규범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하지않든지를 不問하고 거기에 同調하도록 期待가 되는 그러한 標準이다."[4] 이 定義에서는 同調에의 期待가 重要한 것 같다.

Broom과 Selznick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모든 사회는 적절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밝히는 규칙이나 규범을 갖고 있으며 그 규칙에 同調하느냐 또는 逸脫하느냐에 따라 個人들은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다. 규범이란 行爲의 青寫眞으로서 個人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方法을 물색할 수 있는 限界를 그어준다. 규범은 文化的 價値에 기초하여 있고 이 가치는 도덕적 기준, 合理的 推理 혹은 美的 判斷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다."[5] 이 定義가 가장 흔히 받아드려지는 定義인 것 같다.

Homans는 다음과 같이 定義를 내린다. "규범이란 集團의 成員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서술(statement)로서 이것은 반드시 成員 全體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成員들이 만드는 것이다".[6] 여기서는 當爲性이 강조되고 있다.

Gibbs는 여러 社會學者들의 定義를 일별한 후 이 定義들이 規範의 性格에 관한 명료한 서술을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性格을 알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던진다.[7] 즉 규범은 반드시 行爲를 지배하는가? 어떤 基準이 規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逸脫을 허용하는가? 規範은 사람들이 그것을 正當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는 意味에서 集團的 價値와 一致해야 하나? 즉 規範의 正當性의 限界는 무엇인가? 만약 규범이란 正當性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植民地下의 軍法은 規範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많은 질문들이 반드시 대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念頭에 두고 規範을 총괄적으로 定義하려면 무득불 規範의 諸 類型에 대한 把握이 앞서야 할 것이다. 規範은 결코 同質的인 것이 아니므로 學者들은 어떤 한 型에 자기

---

(3) Gibbs는 規範에 대한 社會學的 定義가 대단히 난잡한 것을 例를 들어 지적한다. *Op. cit.*, pp. 586-587.

(4) Robert Bierstedt, The Social Order (Second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63), p. 222.

(5) Leonard Broom and Philip Selznick, *Sociology*(Third ed.; New York : Harper & Row, 1963), p. 68.

(6) George Homans,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61). p. 46 Homans와 비슷하게 規範의 當爲性(ought)을 강조하는 社會學者로서는 Johnson Morris, Williams등인데 이들은 자연히 規範의 裁制(sanction)의 속성을 강조한다. Harry M. Johnson, *Soci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60), p. 8; Richard T. Morris, "A Typology of Nor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October, 1956), p. 610; Robin M. Williams, Jr., *American Society* (2nd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pp. 24-25.

(7) Gibbs, *op. cit*, p. 587.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어 총괄적 定義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 類型을 안다고만 해서 보편타당한 定義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K. Davis는 規範을 folkways, mores, custom, customary law, enacted law, morality 등으로 區分해서 論하면서도 이 모든 類型에 적용시킬 수 있는 公式的인 定義를 내리지 않았다.(8) 社會學者들은 規範은 多樣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相互 排他的이고 철저하게 區分된 規範의 類型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듯하다. 前述한대로, 대체로 規範을 folkways, mores와 law로 三分한다. 이 세가지는 規範의 모든 類型을 망라하지 않는다. 단지 一部分만을 나타낼 뿐이다. 規範의 類型을 만족스럽게 세우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狀況에 따라 별로 영향받지 않는 規範의 "本質的" 屬性과 狀況에 따라 變化하는 屬性을 區分해야 한다.

社會學者 Morris는 규범이 다음 몇가지 속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9) ① 規範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程度, ② 規範이 正當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 ③ 어느 정도 광범하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④ 規範의 制裁程度, ⑤ 規範行使의 一貫性 與否 ⑥ 權威의 源泉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⑦ 規範이 內面化된 程度, ⑧ 規範의 傳受樣式 및 ⑨ 規範에의 同調의 量과 質. Gibbs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Morris의 屬性은 規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나, 同一한 型에 속하는 규범도 以上의 9가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類型을 세우는 데 Morris의 方式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Morris는 "本質的"인 規範屬性과 "經驗的"인 屬性을 混同하고 있다.(10)

規範을 총괄적으로 定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本質的 屬性에 注目해야 한다.(11)

첫째,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集合的 評價, 둘째, 어떤 行爲가 유발될 것인가에 대한 集合的 期待, 그리고 셋째, 制裁(sanction)의 適用을 포함하는 行爲에 대한 特定한 反應. 이 세가지 屬性을 바탕으로 規範을 定義하게 되면 그 定義는 모든 類型에 적용될 수 있는 普遍的인 것이 된다. 하나 하나를 따져보자.

(1) 集合的 評價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規範의 性格은 어떤 方式으로 行動해야 한다든지, 해서는 않된다고 하는 集合的 評價일 것이다. 이러한 評價는 Parsons와 같은 構造機能主義者들의 立場에서 잘 이해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立場에서는 共與된 價値(shared values)를 重要視하기 때문이다. 어떤 行爲에 대한 集合的 評價가 어떤 型의 規範의 속성은 될 수 있으나 모든 종류의 規範의 屬性은 될 수 없다. 周知하는대로 外部的 權威나 이른바 "人氣없는 法律"에

(8) Kingsley Davis, *Human Society* (New York: Macmillan Co., 1949) 三章參照.
(9) Morris, *op. cit.*
(10) Gibbs는 本質的인 屬性을 "definitional attribute", 經驗的인 것을 "contingent attribute"라고 각각 表現했다. Gibbs, *op. cit.* p. 589.
(11) Ibid

의하여 강제된 규칙은 共與된 價値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規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慣習으로 생각하는 規範도 集合的 評價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즉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集合的 評價를 慣習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集合的 期待

集合的 評價는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集合的 期待는 行爲가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예견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交通規則은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나(集合的 評價)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킬 것으로 예견할 수 없다. 評價와 예견은 別個의 問題임을 일단 수긍해야 한다. 이 두 屬性을 혼동하게 되면 規範의 종합적 分類를 하기 어렵게 된다.

(3) 行爲에 對한 反應

規則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간에 이러한 行爲에 대한 反應을 고려함이 없이는 規範의 綜合的 定義를 내릴 수 없다. 이 反應은 곧 規範의 制裁를 뜻한다. Weber의 法에 대한 理解는 여기에 適合한 것 같다. 어떤 特定한 位置에 있는 사람들이 同調行爲를 불러 일으키든지 혹은 逸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物理的인 또는 心理的인 강제력을 적용할 것이라는 개연성에 의해 어떤 질서가 外的으로 보장되면 이 질서가 곧 法이라고 Weber는 보았다.[12] 이러한 Weber의 法規定 속에서는 集合的 評價나 期待가 重要한 것이 아니라 行爲에 대한 制裁的 作用이 重要하다. 法의 개념을 여기서 장황하게 論할 필요가 없겠으나, 規範의 한 種類로서의 法은 集合的 지지나 예견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地位에 있는 사람이 第三者에 의해 보복당할 가능성을 거의 의식함이 없이 物理的 制裁를 가할 수 있을 때 생긴다는 점을 밝혀두어야 한다.[13]

이제 이상의 세가지 屬性을 기준으로 規範을 총괄적으로 分類해 볼 必要가 있다. Gibbs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14] 이 分類에서 法과 諸 社會規範間의 關係가 선명히 밝혀진다. 〈表 I〉을 보면, 어떤 행위가 발생했을 때 制裁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가 혹은 낮은가를 分類한다. 制裁를 가하려는 시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떤 特定한 地位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制裁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中心으로 다시 分類한다. 다른 한편 集合的인 評價와 非集合的인 評價로 나누어서 規範을 이해하고 이 각경우 集合的 期待와 非集合的 期待로 細分한다. 이렇게 하여 規範을 비교적 총괄적으로 分類할 수 있다.

위의 諸 類型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社會學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制裁가 따

(12) Max Rheinstein(ed.,),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 5.

(13) 法과 規則間의 差異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規則을 집행하는 사람은 第三者에 의해 보복당할 가능성을 안고 강제력을 사용하게 된다.

(14) Gibbs, op. cit. p. 591.

〈表 1〉 規範의 類型

		행위가 발생할 때 制裁의 가능성 낮음.	행위가 발생할 때 制裁의 가능성 높음			
			制裁主役이 不特定함		特定地位에 의한 制裁	
			非强制力에 의한 制裁	强制力에 의한 制裁	非强制力에 의한 制裁	强制力에 의한 制裁
集合的 評價	集合的 期待	A Collective conventions	D Collective morals	H Collective Mores	L Collective rules	P Collective laws
	非集合的 期待	B Problematic conventions	E Problematic morals	I Problematic mores	M Problematic rules	Q Problematic laws
非集合的 評價	集合的 期待	C Customs	F ( )	J ( )	N Exogenous rules	R Exogeneous laws
	非集合的 期待		G ( )	K ( )	O Coercive rules	S Coercive laws

르지 않을 때 이 규범을 custom 과 convention 으로 불러 왔다. Weber 의 區別에 따르면[15] convention은 어떤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集合的 評價이다. 그런데 convention이 集合的 評價이긴 하나 이것이 반드시 集合的 期待일 수는 없다. 集合的 評價와 期待가 一致할 때 이 규범은 集合的 性格을 띤 convention 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problematic convention 이 된다. 여기 problematic 이라고 함은 과연 사람들이 이 規範에 同調할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갖기 때문이다. Custom 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행위를 할까에 대해 共同(集合)의 예견을 할 수 있는 規範이긴 하나 반드시 어떻게 행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意見一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Rule과 law에는 각각 네가지 型이 있다. 集合的 評價와 期待의 여부에 따라 네가지로 區分된다. Rule의 요체는 어떤 特定地位에 있는 사람들이 行爲를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制裁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law는 강제력을 통해 制裁를 가할 때 생긴다. 集合的인 평가와 예견에 기초할 때 즉, 一般的인 지지를 받을 때 law와 rule 은 collective 의 性格을 띤다. 그러나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集合的 지지는 받되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킨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을 때 problematic 의 性格을 띤다. 교통규칙이나 교통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 다른 한편, 사람들이 law나 rule을 正當한 規範으로 보지 않지만 이것에 同調할 것인가에 대해 확신히 예견할 수 있을 때 규범은 exogeneous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어떤 규범에 대해 共同의 평가와 예견을 할 수 없으나 강제력으로 制裁를 할 때 coercive law 가 되고 강제력으로 制裁를 하지 않을 때는 coercive rule 이 된다.

(15) Rheinstein, *op. cit.*, p. 5.

Mores는 行爲의 當爲性에 대한 評價의 立場에서는 convention과 비슷하지만, Sumner의 理解대로 mores가 社會全體 福祉에 대단히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特定地位에 의해 강제력으로 制裁를 한다는 立場에서는 convention과 다르다. mores와 law가 다른 것은 制裁의 主役이 mores의 경우 不特定하고 law의 경우 分明하다. 强制力에 의존한다는 점에 law와 mores는 同一하다. 原始社會에서는 現代社會에서의 法이 不在하더라도 mores가 法의 機能을 담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理解할 수 있다. 原始社會에서는 制裁의 主役이 特定地位와 연관되어 組織化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16) Moral은 mores, rules 및 law와 같이 行爲가 制裁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과 다른 점은 特定地位에 의한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內面化된 規範으로서의 良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대번에 理解할 수 있다.

以上의 Gibbs의 分類와 類型은 비록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社會學에서 흔히 쓰는 諸 規範間의 槪念的 關係를 體系的으로 밝혀 주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특히 社會的 規範과 法과의 關係를 論理的으로 밝혀 주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類型論이 廣義의 規範에 대한 社會學的 理論이나 說明으로 볼 수는 없다. 엄격한 意味에서 理論이나 說明이 되려면 槪念의 分類나 類型보다는 命題의 수립과 命題間의 論理演繹的 導出이 이루어져야 한다.(17)

三. 役割의 性格과 類型

이제 役割의 性格과 類型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規範(法을 포함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前述한대로 役割은 社會學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 分析單位이다. 心理學과 달리 社會學은 個人의 行動이나 態度를 對象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人間의 行爲를 無視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構造的 要素인 役割과 聯關된 個人의 行爲나 態度에 관심을 갖는다. 役割이 주요개념이다. Parsons에 있어서는 役割이 社會體制(social system)의 最基底가 된다.(18)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社會關係, 規範 및 價値의 순서로 체계가 구성된다.

役割을 Linton式으로 어떤 地位를 가진 사람의 特定한 行爲와 연관시키게 되면,(19) 자칫 잘못하다가는 心理學的 還元論에 함몰될 위험이 있어, 많은 사회학자들은 애써 役割을 構造

(16) E. A. Hoebel, The Law of Primitive M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Ronald M. Berndt, Excess and Restraint(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7) 論理演繹的 體系로서의 理論에 대해서는 Homans의 册을 참조하라. G. Homans, *The Nature of Social Science*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7)

(18) Talcott Parsons, *Social System* (Free Press of Glencoe, 1951)

(19) Ralph Linton, *The Study of Ma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6): "Role and Status." *M.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ed., T.H. Newcomb and E.L. Hartlez(New York: Henry Holt, 1957).

的 期待樣式으로 規定하려고 한다.[20] 여기서 構造的이라 함은 個人의 次元이 아니라 集團이나 體制의 次元에서 役割의 性格을 규명한다는 뜻이다.

役割의 核心的 屬性을 期待로 把握할 때 과연 이 기대의 源泉이 무엇이냐에 따라 異見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役割에 대한 經驗的 調査를 한 Gross 등은 어떤 役割을 둘러싼 여러 役割 保有者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갖는 意見이나 期待의 合一을 강조했다. 이른바 "postulate of role consensus가 바로 그것이다.[21] 즉 Gross 式으로 이해하자면 役割의 期待內容을 사람들이 채우는 격이 된다. 이러한 立場에 대하여 Dahrendorf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는 役割期待와 이 期待에 따른 制裁는 集團成員이나 非成員들의 意見과는 관계없이 어떤 役割과 網을 이루게 되는 集團들의 具體的인 規範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22] 결국 Dahrendorf는 役割과 規範을 密着시킨다.

이제 役割과 規範(法을 포함하는)에 대한 그의 立場을 간단히 밝혀보자. 먼저 役割에 대한 그의 理解는 다음과 같다. 社會學的 分析의 한 要素로서役割의 特性에는 세가지가 있다. (1) 役割은 地位(position)와 마찬가지로 行爲의 指示(prescriptions for behavior)의 準客觀的 複合體(quasi-objective complex)로서 원칙적으로 個人과 無關하다.

(2) 役割의 具體的 內容은 어느 個人에 의해 規定 내지 再規定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에 의해서 된다. (3) 役割期待는 個人에게 拘束力을 갖는다. Dahrendorf가 지적하는 社會役割의 세가지 特徵은 Durkheim의 方法論的 立場과 대단히 類似한 것 같다. Durkheim 의 이른바 社會事實의 두가지 특성, 즉 外在性과 拘束性과 Dahrendorf 의 세가지 役割特徵과 너무나 비슷하다.[23]

役割期待의 拘束力은 制裁(sanction)에서 나온다.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잘 수행하면 상을 받든지 적어도 벌을 받지는 않게 된다. 역할과 賞罰이라는 制裁와는 不可分의 관계를 맺는다. 命令的으로 規定된 役割期待에 同調하게 하는 社會壓力은 결코 現代社會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社會에서 발견되는 普遍的 特徵이다. 制裁 없이 役割을 생각할 수

(20) 役割을 期待樣式으로 보는 경우도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地位를 가진 사람의 行爲에 대한 期待樣式인데 이것을 prescribed role이라고 한다면, 어떤 地位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相互作用할 때 자기 행동에 적용시킨 수 있다고 생각하는 期待樣式을 subjective role이라고 할 수 있다. Morton Deutsch and Robert M. Krau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Inc. 1965), p. 175.

(21) Neal Gross, W.S. Mason, and A.W. Mc Eachern, *Explorations in Role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1958).

(22) Ralf Dahrendorf,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48-49.

(23) 간혹 한국사회과학자들 가운데 Dahrendorf를 이른바 극단적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의 代表者로 보는데 이것은 短見이다. Dahrendorf는 構造機能主義나 이른바 均衡理論(Equilibrium model)을 깡그리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 두 理論의 相互補完性을 강조하며 나아가 役割에 대한 그의 理解는 Durkheim의 立場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오히려 구조기능주의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다.

없다. 制裁가 役割을 役割답게 만들어 주는 役割의 요체이다.

이렇게 볼 때 役割과 規範과의 관계는 뚜렷해진다. 制裁의 效果는 法의 힘에 의해 지지받는 役割期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Dahrendorf 는 여기서 役割期待를 세가지로 나누어 "must-expectation", "shall-expectation" 및 "can-expectation"이라고 부른다.(24) 이중 must-expectation 은 法的 制裁를 불러일으키는 役割期待이다. 이것은 役割의 노란자위와 같은 요소이다. must-expectation 은 法의 强制力에 기초하고 있다. 韓國에서 한 남자가 여러 女子를 正式 아내로 맞을 수 없다는 것은 must-expectation이며 이것을 어길 때는 法的 制裁를 받게 된다. 이 경우 制裁는 분명히 否定的이다. 즉 罰이 된다. 그렇다고 法과 法廷만이 役割期待와 制裁의 유일한 表象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法律的으로 통제받는 行爲의 범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다. 現代社會에서는 그 前의 社會에 비해 이러한 범위가 더 커지고 복잡해진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現代社會에서 法的 制裁에 기초하지 않는 役割이 아주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法과 法廷의 영향력을 초월하는 社會行爲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어떤 政黨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政黨의 立候補者를 위해 연설한다면 이것은 法的 制裁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른바 社會的 心理的 制裁를 받게 된다. 사실, 現代社會에서는 많은 組織體들이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準法律的 制度를 마련하여 同調行爲를 불러일으킨다. 아마도 이같은 制裁가 公式的인 法制裁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變節者나 배반자로 낙인찍어 疎外시키든지 경원하게 되면 그 心理的 부담은 결코 法的 制約보다 가볍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같은 期待를 Dahrendorf 는 "shall-expectation"이라고 불렀다. 이 경우 制裁는 否定的이고 또 否定的인 形態는 분명하지만, 肯定的 制裁는 뚜렷하지 않다. "shall-expectations"에 同調하면 人氣나 名聲 같은 형태의 肯定的인 制裁를 가하나 否定的인 것과 같이 뚜렷하지는 않다. 다음, "can-expectation"이라는 役割이 있다. 이것에 同調하면 肯定的 制裁는 뚜렷하지만 否定的 制裁는 희미하다.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내를 매일 즐겁게 해주는 것은 "can-expectation"에 속한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法的 拘束이나 社會的 拘束을 뚜렷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以上의 論議를 圖式으로 表示하면 表〈2〉와 같다.

以上의 세가지 期待間의 相互關係를 소상히 밝히는 작업은 法社會學의 主要課題中의 하나이다. must-, shall-, 그리고 can-expectation과 法, 慣習 및 習慣(habit)간에는 긴밀한 對照關係가 形成된다. 즉 法과 must-expectation, shall-expectation과 慣習, 그리고 can-expectation과 習慣간에는 일종의 아나로기아가 형성된다. 個人의 버릇인 습관이 歷史的인 過程을 거쳐 共同體의 관습으로 변화되고, 관습이 장구한 세월을 거쳐 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4) Dahrendorf, op. cit, pp. 39-42.

〈表 2〉 役割期待와 制裁의 類型

期待의 種類	制裁의 種類		行爲의 例
	肯定的	否定的	
Must-expectation	——	法廷에 의한 罰	금전관계가 正直함
Shall-expectation	(人氣)	社會的 疎外, 差別 및 除去	클럽會合에 열심히 참여
Can-expectation	尊敬	(人氣없음)	자진해서 클럽基金을 모금함

※ 어떤 클럽의 會計의 경우를 例로 든다면.

문제는 어떠한 役割期待든지간에 歷史的 變化와 社會狀況의 變化를 초월할 수 없다. 마치 法을 밑받침한 社會體制가 변화되면 法의 妥當性이 상실되고, must-expectation도 따라서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 예컨대 長子相續에 관한 法이나 庶子에 대한 法的 規定이 王朝時代와 오늘에서 많이 달라졌다. 여기서 장황하게 法, 慣習 및 習慣간의 관계와 이것이 役割期待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說明할 수 없다. 重要한 점은 役割遂行을 통해 人間은 社會의 規範體系 특히 法制度와 긴밀히 관련을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役割이 한 個人의 행동을 막연히 規制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法, 慣習 및 習慣과 연관되면서 人間의 行爲를 規制한다. 이중에도 役割 속에 있는 法的 制裁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Dahrendorf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役割의 制度化의 程度, 즉 役割期待들이 法的 制裁를 받는 정도에 따라 役割이 社會 全體와 個人에게 얼마나 重要하고 有意한지가 판가름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制裁의 程度를 정확히 量化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 內에서 모든 役割의 性格을 파악하고 分類하는 데 대단히 有益한 道具를 갖게 될 것이다.[25] 法의 경우에는 이같은 무게가 비교적 쉽게 量化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筆者는 社會規範과 法과의 관계를 理解해 보기 위한 作業으로 社會規範과 役割의 性格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社會規範 및 役割의 性格을 파악해 보기 위해 Gibbs와 Dahrendorf의 分類를 주로 소개했다. 이같은 分類法 속에서 비록 간접으로나마 社會規範과 役割이 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槪念的으로 밝혀본 셈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法과 社會規範과를 좀 더 本格的으로 알아보기 위해 法의 性格과 類型을 把握해 볼 必要가 있다. 社會規範을 비교적 총괄적으로 分類한 Gibbs는 그후 法도 상당히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分類하고 있다. 그의 分析을 통해 法과 社會規範間의 關係를 보다 깊게 理解해 보기로 한다.

四. 法의 性格과 類型

原始社會이건 現代社會이건간에 社會秩序를 확보하는 것이 그 社會의 至上目標임에는 틀림

(25) Ibid, p. 43.

없다. 이 目標達成을 위해 形成된 社會制度中에 중요한 것이 法制度이다. 물론 社會學에서는 法的 制裁가 이 社會秩序 確保의 唯一한 方法이라는 立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erger가 지적한대로 社會統制는 法 以外에도 여러가지 非法的 매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26] 한 사회 내의 社會統制方法이 多樣할 뿐 아니라, 社會의 發展段階로 보아도 社會統制의 形態는 多樣하다.

原始社會에서는 社會가 單純하고 同質的이어서 이른바 共通價値만으로도 효과적인 社會統制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고도로 公式化된 法體系는 不必要했을런지 모른다. 예컨대 유목인인 에스키모사회에서는 각박한 환경 속에서 生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生存自體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묘한 정치체제와 法體制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政治의 基本單位는 가족이며, 경제의 기본단위도 가족이다. 가족의 기능은 정치, 경제, 법, 사회, 종교 등의 모든기능을 포괄하는 全體的인 것이었다.[27] 마찬가지로, Trobriander의 사회에서도 관습과 集合的 宗教儀式을 통해 家族이 社會秩序를 形成하는 主役을 담당한다. 이같이 同質的인 單純社會에서는 法의 힘이 없이도 逸脫行動을 社會的으로 規制할 수 있었다.[28] 이런 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shall-expectation"이 社會統制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겠다.

社會가 急變하고 그 構造가 複雜多樣하게 됨에 따라 社會統制가 가족 같은 한가지 制度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고도로 公式化된 法制度가 傳統的 統合機能을 補助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異質的 現代社會에서 法 以外의 統制手段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法社會學의 主要課題가 바로 이같은 다른 形態의 社會統制 매카니즘에 대한 綜合的 理解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法社會學은 Durkheim, Weber 및 Ehrlich 등이 가졌던 보다 巨視的이고 綜合的인 觀點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社會에서 왜 法曹人이 必要한가를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검사와 판사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法官이 充員되는가 하는 次元에서 法社會學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基本的인 문제인 社會規範現象에 대한 설명은 회피하려고 한다.[29] 基本的인 規範現象을 진지하게 다루려면 法社會學은 반드시 社會規範으로서의 法에 대한 通時的이고 共時的인 研究와 綜合的이고 分析的인 研究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제 本論考에서는 社會規範으로서의 法의 性格을 총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26) Peter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3).

(27) E.A. Hoebel, *The Law of Primitive Man* (Cambridge: Harvard Press, 1954), pp. 67-69.

(28) Bronislaw Malinowski, *Crime and Custom in Savage Society*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26): Karl N. Llewellyn and E.A. Hoebel, *The Cheynne Wa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4).

(29) J.P. Gibbs, "The Sociology of Law and Normative Phenome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une, 1966), p. 315.

法의 개념적 理解를 총괄적으로 시도한 法學者中에 우리는 Hohfeld를 빠트릴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은 槪念圖를 重視한다.[30]

Jural Opposites:

Right	Privilege	Power	Immunity
No-Right	Duty	Disability	Liability

Jural Correlatives:

Right	Privilege	Power	Immunity
Duty	No-Right	Liability	Disability

上記 여러 술어가 多樣하게 쓰이고 흔히 混同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나아가 기본적인 法的 關係(legal relations)를 밝히기 위해 Hohfeld는 이러한 槪念圖式을 提示한 것 같다. 그는 기본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right is one's affirmative claim against another, and a privilege is one's freedom from the right or claim of another. Similarly, a power is one's affirmative 'control' over a given legal relation as against another : whereas an immunity is one's freedom from the legal power or 'control' of another as regards some legal relations."[31]

筆者가 社會規範의 分類에서도 지적한대로 Hohfeld의 法的 關係(legal relations)의 分類도 여러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 예컨대 "affirmative claim against another"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하다. claim이 타당하려면 그리하여 하나의 right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power를 定義함에도 능제란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物理的 統制인지 內面化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개념들이 法이나 法的 關係에 대한 총괄적(generic) 定義에로 발전되지못한 형편이다.

이것에 비해 Corbin의 개념처리는 훨씬 분명하다. 예컨대 Corbin은 right와 duty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If we determine that A must conduct himself in a certain manner he has a duty to B, and B has a right against A."[32] 물론 Corbin의 定義는 Hohfeld의 그것보다는 우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may니 must니 하는 것이 物理的 可能性이나 當爲性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道德的인 것을 意味하는지 分明하지 않다.

---

(30) Ibid. p. 316.

(31) Wesley Newcomb Hohfeld,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9), p. 60.

(32) Arthur L. Corbin, "Legal Analysis and Terminology," Yale Law Journal, 29 (December, 1919), p. 1065. Corbin은 may, can등의 助動詞를 사용하여 privilege, power등의 개념을 定義하였다. 예컨대 "If we determine that by his own voluntary act A *can* change B's legal relations with A (or with X), A has a legal power and B has a liability."가 바로 그것이다.

前述한대로 社會規範으로서의 法은 行爲에 어떤 結果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종국에 가서 法的 結果란 制裁의 行使 혹은 制裁의 보류인데 Corbin과 Hohfeld는 다같이 이 制裁를 法的 關係에 있어 重要한 屬性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弱點을 補强하여 法 또는 法的 關係를 보다 분명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Gibbs는 말한다. (1) 行爲의 omission과 commission의 與否, 그리고 (2) 어떤 行爲가 制裁와 어떻게 연관 맺느냐 하는 문제.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法的 關係를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33]

〈表 3〉 法的 關係 및 法의 分類

	Egos who Commit the Act		
Egos who Do Not commit the act	모든 Ego는 法的 制裁를 받아야 함.	약간의 Ego는 法的 制裁를 받아야 함.	法的 制裁를 받을 Ego는 없다.
모든 Ego는 法的 制裁를 받아야 한다.	( )	( )	Prescriptive
약간의 Ego는 法的 制裁를 받아야 한다.	( )	Conditional	Status prescriptive
法的 制裁를 받을 Ego는 없다.	Proscriptive	Status proscriptive	Permissive

위의 表에서 空欄은 논리적으로 보아 不可能한 경우이다. 즉 어떤 行動을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을 다같이 벌주는 法을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非該當을 빼면 모두 여섯가지 法的 關係로 區分하게 된다. 이 분류는 "*prescription* 對 *proscription*"과 "status 對 *universalism*"과 "legal relations *in rem* 對 *in personam*"의 對比를 포괄하는 長點이 있다.

指示的 法關係란 문제의 行爲를 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는 안되고 반대로 行爲를 안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할 때 생기는 관계이다. 이 행위에 他者들이 관여하게 되면 自我(ego)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指示的 義務(prescriptive duty)를 지고 他者는 指示的 權利(prescriptive right)를 갖는다.

禁止的 法關係는 行爲를 하게 되면 法的 制裁(否定的인 것으로 罰 같은 것) 를 받아야 하나 그 行爲를 하지 않을 때는 制裁를 받아서는 안될 때 생긴다. 他者와 相互作用해야 할 경우 自我는 모든 他者에게 역시 禁止的 義務를 지고 他者들은 禁止的 權利를 갖는다. 이것이 곧 duty *in rem* 또는 right *in rem*을 뜻한다.

어떤 행위를 해도 法的 制裁를 받아서는 안되고 하지 않아도 制裁를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 許容的 法關係(permissive legal relations)가 생긴다. 他者와 相互作用하는 경우 自我에게는 特權(privilege)이, 他者에게는 無權利(no-right)가 적용된다.

(33) Gibbs, *op. cit.*, p.319.

어떤 경우에는 權利나 義務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와 一部 사람에게만 적용될 때가 있다. 여기의 一部라고 하는 것이 一種의 社會的 또는 人口的 特性을 나타내게 되면 "Status"의 權利나 義務라고 부른다. "Right or duty *in personam*"은 이것과는 달리 어느 特定個人이나 集團에 적용할 경우를 가르킨다. 예컨대 21歲 以前에 술을 빠에서 마시면 制裁를 받는다고 할 때 "21歲 以前"은 한 status를 가르킨다. 이것은 "status proscription"이다. 그리고 戰時에 兵務廳에 入隊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年齡層에만 해당되므로 "status prescription"이다.

制裁가 行爲 與否와는 관계없고 이 行爲의 與否에 대한 他者의 評價에 따라 적용될 때 이른바 "conditional legal relations"가 생긴다. 이 경우 自我의 義務는 指示的이기도 하고 禁止的이기도 하되 法關係가 "in personam"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關係下에서는 他者는 "right in personam"을 갖게 된다. 계약법이 바로 條件的 法의 좋은 例가 된다.

위의 圖式에서 注目해야 할 것은 當事者인 自我(ego)는 義務나 特權을 가질 수 있는 反面 他者는 權利 또는 無權利(no-right)를 갖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두렷한 法的인 關係가 成立함을 알 수 있다. Hohfeld의 圖式에서는 이 점이 불분명했다.

Gibbs는 指示的, 禁止的, 許容的, 및 條件的 關係를 法的 規範과 法外的 規範에 적용하여 모두 16個의 規範을 提示한다. 例컨대 法과 法外的 規範이 다같이 指示的일 때 이것을 理想的 規範이라고 부르고, 法은 許容的인데 法外的 規範은 指示的일 때 이것을 道德的 規範으로 命名한다.[34] 다음 〈表 4〉를 參照하라.

〈表 4〉 行爲에 對한 規範的 評價의 類型

法外的 規範의 종류 \ 法의종류	指示的	條件的	禁止的	許容的
指示的	Ideal	Equitable	Exonerative	Moral
條件的	Jus strictum	Contingent	Lenitive	Exemptible
禁止的	Contradictory	Inequitable	Mala in se	Immoral
許容的	Ex lege	Jus Singulare	Malum Prohibitum	Neutral

〈表 4〉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必要하다. Gibbs는 美國社會에서 例를 들고 있다.

① "Ideal" 規範(넓은 의미에서)이란 軍의 영장을 받으면 즉시 入隊하는 것.

② "Equitable"은 친구와의 약속을 존중하는 것.

③ "Exonerative"는 남편이 자기 아내의 情夫를 구타하는 것.

④ "Moral"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

⑤ "Jus Strictum"은 자기의 一年收入을 稅金을 내기 위해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

(34) Ibid., p. 323.

⑥ "Contingent"은 他人의 財産을 利用하는 것.

⑦ "Lenitive"는 빠찡꼬 같은 것으로써 도박하는 것.

⑧ "Exemptible"는 結婚前 性交하는 것.

⑨ "Contradictory"는 安息教 같은 反戰信者들이 軍에 入隊하는 것.

⑩ "Inequitable"는 자기에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女性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남자의 행위.

⑪ "Mala in Se"는 近親相姦.

⑫ "Immoral"은 카토릭 信者가 避姙藥을 사용하는 것.

⑬ "Ex Lege"는 人種差別 없이 고객을 대하는 것.

⑭ "Jus singulare"는 私的인 파티에서 十代에게 술을 권하는 것.

⑮ "Malum Prohibitum"은 制限時間을 넘게 停車시키는 것.

⑯ "Neutral"는 증권시장을 조사해 보는 것.[35]

以上과 같은 分類法은 비록 엄격한 意味에서의 理論에 이르는 첩경은 될 수 없으나 社會規範現象을 서술하고 分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社會統合(social integration)과 아노미(anomie)의 性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Durkheim의 아노미는 行爲에 대한 社會的 規制가 약화될 때 생겨나는 構造的 狀況을 意味한다.[36] 그런데 여기 애매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社會統合과 아노미의 관계다. 社會的으로 規制받음이 없이 社會的 統合은 不可能할 것인데, 만일 社會的 規制가 最小일 경우를 아노미라고 한다면 〈表 4〉에서 中性的 規範狀況이 가장 아노믹한 상황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法的으로나 法外的으로나 행동을 하든지 하지않든지간에 制裁를 받지 않는 "自由로운" 狀況이 아노미에 가깝다는 命題가 나오게 된다.

과연 許容的 規範이 아노미일까? 許容的 規範下에서는 個人들이 否定的 社會制裁를 고려하지 않고 行爲를 選擇할 수 있다. 물론 이 행위의 결과가 다음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社會規制가 아니라 일종의 "自然的 結果"이다. 만일 인간이 社會的 規制(法的 制裁를 포함하는)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行動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유일한 행동규제는 스스로 自己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일게다. 自己行爲를 스스로 통제할수록, 즉 自然的 結果만을 예견하여 자유롭게 행동할수록 社會規制는 약화되어 아노미 狀況에 빠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과연 許容的 規範이 아노미를 意味할까? 이 문제를 좀 더 잘 理解하기 위해 無規範으로서의 아노미에 대한 考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

(35) 表 4를 보면 "Ideal"型의 規範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規範들은 一貫性이 있다. 反對의 대각선상에 있는 型들은 상당한 離散度(divergence)를 보여주고 있음에 注目해야 한다.

(36) Emile Durkheim, *Suicide*, translated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1), p. 253.

五. 無 規 範

無規範을 뜻하는 아노미理論만큼 社會學에서 脚光을 많이 받은 社會學的 理論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37] 각종 逸脫行爲와 社會統合을 다룬 社會學的 文獻들이 거의 아노미 槪念을 使用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뒤르께임은 anomie란 술어를 그의 著書 〈社會分業論〉에서 사용했다.[38] 그후 〈自殺論〉에서 아노미적 自殺型을 論하면서 아노미 개념은 훨씬 분명해졌다. Durkheim 以後 이 개념은 몇 차례의 修正을 거쳐 왔다. 이것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도 自殺에 국한하지 않고 政治的 參與, 宗教的 및 人種的 偏見, 各種 逸脫行動을 포함하게 되었다. Durkheim은 自殺現象을 個人의 心理的 特質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社會構造的인 현상으로 보았다. 社會統制 내지 社會規制와 긴밀히 연관시켰다. 社會規範이 갖는 拘束力이 規範의 弱化 내지 瓦解로 弱해지면 本質的으로 上限線 없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人間의 慾求가 社會統制의 허약을 틈타 마구 뻗게된다. 여기, 規範的 아노미는 行動的 아노미로 연결된다. 自殺現象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삼아야할 것은 規範의 弱化라고 할 때 이 규범이 어떤 규범인가 하는 것을 보다 소상히 밝혀야 한다. 本考에서 밝힌 여러 型의 規範中에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를 밝혀야 한다. 물론 여러 型中에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Durkheim 자신도 法만을 두고 無法狀況을 곧 아노미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mores, morals, conventions와 law에 모두 포함하는 人間行爲를 規制하는 規範을 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人間慾求를 가장 잘 관리하는 規範이 어떠한 것이며, 만일 거의 비슷하게 욕구를 관리한다면, 아노미의 종류도 規範의 종류만큼 많아야 할 것이다. 즉 mores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아노미, convention이 깨어지면서 생기는 아노미 등으로 細分해서 그 性格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면 前述한 許容的 規範 그 自體가 아노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만일 "理想的 規範"이 갑자기 瓦解되어 許容的 規範狀況이 벌어지면 아노미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許容的 規範 그 自體를 아노미의 指標로 보기 어렵다.

최근 Olsen은 뒤르께임도 아노미를 두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社會學者들이 모르고 계속 사용해 왔다고 비판한다.[39] 社會分業論에서는 人間의 相互作用을 규제하는 節次上의 規則의 不在를 아노미라고 본 반면, 自殺論에서는 人間의 慾求를 관리하는 道德的

(37) 韓完相, 現代社會와 靑年文化 : 젊은이의 熱望, 挫折 및 逸脫에 대한 比較社會學的 硏究, (서울 : 法文社, 1973), p. 138. 특히 註 25를 參照할 것.

(38)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trans. by G. Simpson (Free Press of Glencoe, 1964). pp. 353-374.

(39) M.E. Olsen "Durkheim's Two Concepts of Anomie,"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69) pp. 37-44.

規範의 瓦解를 아노미로 보았다. 社會體制內의 複雜한 專門化된 諸 部分間의 關係를 規制하는 規則이나 規範의 瓦解로서의 아노미와 慾求管理를 하는 道德的 規範의 瓦解로서의 아노미는 마땅히 區別되어야 한다. 前者는 이른바 機能的 社會統合에 直結된다면 後者는 規範的 社會統合에 直結된다.(40)

이렇게 볼 때 아노미를 유발시키는 要因들도 아노미의 型에 따라 다르다. Olsen은 機能的 規範의 瓦解로서의 아노미는 다음 세가지 조건 하에서 생긴다고 주장한다. ① 分業程度가 낮을 때, ② 部分間의 相互依存的인 關係를 統制하는 中央의 調整機能이 弱化되는 경우, ③ 全體社會 運營에 必要한 規範을 社會集團이나 組織體가 지키지 못할 때.

反面 規範的 社會統合의 反對로 쓰이는 道德的 規範의 瓦解로서의 아노미는 다음 세가지 조건 하에서 생긴다. ① 사회의 諸 價値와 諸 規範間의 不一致, ② 사회의 基本價値와 規範을 社會構造가 反映시키지 못하고 具現시키지 못할 때, ③ 사회안의 集團과 組織體가 각각 다른 目標를 세워두고 서로 갈등할 때. 社會學에서 一般的으로 사용되는 아노미는 바로 道德的 規範의 弱化 내지 瓦解를 뜻한다.

Merton에 있어서 아노미는 規範의 弱化나 瓦解가 아니라 文化目標와 制度的 手段間의 乖離를 뜻한다. 規範은 여기서 制度的 手段 속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共通으로 받아드려진 目標를 달성하는데 必要한 手段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 乖離를 극복하기 위하여 個人이 취하는 다섯가지 適應樣式을 Merton은 同調, 改革, 儀式主義, 反逆 및 敗北主義로 表現했다. 이 가운데 첫번째 反應만이 逸脫이 아니고 다른 네가지는 모두 逸脫行爲를 뜻한다. Merton에 있어서 아노미는 規範(그것이 무엇이든)의 瓦解 뿐만 아니라 文化價値 내지 文化目標와 規範間의 關係의 隔差를의미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無法狀況보다는 規範的 社會統合의 底調로 보아야 할 것이다.(41)

역시 社會學에서 逸脫行爲 論할 때는 法學者들의 視角보다는 넓고 包括的임을 대번에 알 수 있다. 筆者는 아노미理論의 妥當性을 다른 두 社會 즉 韓國과 美國에서 經驗的으로 檢證한 바 있다. 犯罪現象을 포함한 刑法을 硏究하는 法學者들은 社會學的 規範分析과 規範理解가 必要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아노미理論이 逸脫行爲를 說明하는데 심각한 制約點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여덟가지의 制約點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Merton의 경우 行爲者의 原子的이고 個人的인 適應樣式에만 注意를 기울인 나머지 他人과의 交涉過程, 相互作用過程이 逸脫에 끼치는 可能性을 看過한다.(42)

---

(40) 規範的 社會統合은 주로 構造機能主義에서 잘 나타나는데 대충 다음 세가지 要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① 規範的 序列과 社會의 基本的 慾求間의 一致, ② 體制의 規範이 內的으로 一貫性있다고 認知됨, ③ 이 規範이 사회 각조직체 내에 철저하게 制度化되어 있음. 機能的 社會統合은 人間生態學에서 주로 擧論된다. 社會內 分化된 單位들이 共生的 關係의 形成을 통해 더욱 相互依存的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韓完相, 上揭書 參照.

(41)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of Glencoe, 1957)

둘째, 아노미理論은 逸脫行動을 아노미라는 構造的 狀況에서 갑자기 생긴 結果로 본다. 이것은 일종의 논리적 飛躍이다. Cohen은 이 점을 갈 지적하고 있다.(43)

셋째, 文化目標와 制度的 手段이라는 二分法은 지나치게 人爲的 分析이다. 실제로는 目標와 手段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이 융통성있게 그어져 있다. A에 대해 目標가 되는 B가 C에 대해서는 手段이 될 수 있다. 이점 Turner는 예리하게 지적한다.(44)

넷째, 고도로 分化된 複雜한 現代社會에서는 普遍的 目標나 價値가 存在한다고 쉽게 가정할 수 없다.

다섯째, 아노미理論이 예견하는대로 逸脫行動이 下流階層에서 두드러지게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中産層과 그 以上 階層에서도 逸脫은 일어나지만 法的 制裁를 받는 可能性이 下層에 比해 적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中産層에서 더 잘 나타나는 犯罪나 非行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아노미理論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여섯째, 아노미理論은 正當한 制度的 手段과 機會의 制限을 강조하지만, Cloward와 Ohlin이 지적하듯이 不當한 機會와 犯罪文化 역시 重要한 要因이다.(45)

일곱째, 社會地位가 成就되는 開放體制에서는 아노미理論이 逸脫行爲를 비교적 잘 說明하나 社會地位가 歸屬的으로 결정되는 閉鎖社會에서는 그 有用性이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여덟째, 아노미理論은 保守的 社會學理論에 근거하고 있어 急激한 社會變化를 說明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制約點을 지닌 아노미理論을 補完하면서 이것을 계속 援用한다면 社會規範現象을 分析하고 理解하는 데 여전히 有用할 것이다. 法과 規範 및 無規範(아노미)間의 力動的 關係에 대한 法學者의 깊은 洞察力과 硏究는 法現象을 綜合的으로 理解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

(42) Merton 은 이 弱點을 補完하기 위해 다음의 論文에서 相互作用過程과 아노미를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R.K. Merton, "Anomie, Anomia and Social Integration: Context of Deviant Behavior," M.B. Clinard(ed.), *Anomie and Deviant Behavior* (Glencoe; The Free Press, 1964).

(43) A.K. Cohen, "The Sociology of Deviant Act : Anomie Theory and Beyon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February, 1965), p. 8.

(44) R. Turner, "Value Conflict in Social Disorganiz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38 (1954), p. 305.

(45) R.A. Cloward and L.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0).

Résumé

A Sociological Analysis on Law, Norm and Normlessness

by Han, Wan Sang*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onceptual schemes of norms which are based on more or less clear-cut generic definitions. In recent years, the sociology of law has been showing a very narrow perspective. Rather than pursu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aw and norms in the tradition of Durkheim, Weber and Ehrlich, the field is recently preoccupied with rather trivial legal matters such as recruitment, legal careers, the public image of the lawyers etc. It is felt that there must be a reorienting endeavour to take up the fundamental question again. In order to do this, a generic taxanomy of norms is called for. If such a generic conceptual schemes is established, jurisprudence and sociology can profit mutually since they share a concern with normative phenomena.

In this paper, an attempt is made to clarify conceptually comprehensive relations between such normative phenomena as law, rule, moral convention, mores, role and custom, etc. The works of Gibbs and Dahrendorf are heavily used in this examination. Finally, the taxanomy can be used to designate the referents of the normative aspects of social integration and anomie.

*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